

# 中國醫藥大學與韓國大邱韓醫大學 交流協議書

為了進一步促進兩校的友好合作關係，中國醫藥大學和大邱韓醫大學達成如下協議：

第一條：兩校在兩國法規許可範圍內進行如下協議。

- 1、共同開展教育及科研交流與合作；
- 2、教授和研究員交流；
- 3、學生交流；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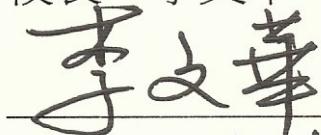
第二條：在本協議的基礎上進行的具體交流事宜，經雙方協商同意另外簽訂實施實際細則。

第三條：本協議由中文和韓文兩種文字寫成，兩種文體具有同等法律效力，本協議經兩校代表簽字後生效，有效期限為五年。如果雙方沒有書面的形式表示要終止協議，本協議將在無須附加其他的協議和簽字程序的基礎上自動延期五年。任何一方欲再次調整本協議內容，可經兩校的協商後決定。

第四條：運用本協議的精神，為了增進兩校的共同利益，如任一方提出需求的事宜，兩校可隨時協商有關合作方案和實施方案。

中國醫藥大學

校長 李文華



日期：2014年5月26日

大邱韓醫大學

校長 卞暢壠



日期：2014年5月26日

## 대한민국 대구한의대학교와 중화민국 중국의약대학의 교류협약서

대한민국 대구한의대학교와 중화민국 중국의약대학은 상호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류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 조. 양교는 양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협력을 진행한다.

- (1) 교육, 과학 연구의 공동추진
- (2)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
- (3) 학생의 교류

제 2 조. 본 협정의 기초 아래 진행되는 구체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양 대학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제 세칙을 별도 체결하여 시행한다.

제 3 조. 본 협정서는 한국어, 중국어의 두 가지 문자로 작성하며, 두 가지 문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. 본 협의는 양교의 대표자가 서명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유효기간은 5년이다. 쌍방이 서면을 통해 협약종료를 알리지 않으면, 본 협의는 별도의 추가협의나 서명절차를 거치지 않고, 자동으로 5년 연기된다. 일방이 본 협의내용의 수정을 원할 때에는 양교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. 본 협정서의 정신을 살리고 양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면 양교는 수시로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실천방안을 검토한다.

대구한의대학교

총장변창훈

날짜 : 2014년 5월 26일

중국의약대학

총장이문화

날짜 : 2014년 5월 26일

EE6958714577W  
(HKT)